

제34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 8. 30.(수)

#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실

#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병근 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최병근·최병준·이선희·김대진·강만수·이춘우·이형식  
김창혁·박영서·허 복·한창화·이우창·백순창·김창기  
신효광·조용진·박승직 의원(17명)

### 2. 제안이유

- 경북도내 불의의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들 중 법령 등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주택복구비 지원, 심리 회복 지원 등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안 제10조)
-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4.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2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 「주택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불임
-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 불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불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 불임

##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3. 8. 22. ~ 8. 2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5호
- 의견제출 : 의견 없음

## 7. 검토의견

### 가. 조례제정 필요성

- 매년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나,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화재 발생시 거주지 전소 등으로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른 이원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의 긴급지원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제1조, 제2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제4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빈집인 경우, 피해주민의 방화인 경우,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적용 제외토록 규정함

- 제5조, 제6조, 제7조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시거처 지원, 주택복구비 지원, 심리회복 지원, 그밖에 화재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화재가 발생한 후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sup>1)</sup>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임시거처 지원 기간, 주택복구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제8조, 제9조, 제10조는 화재피해 지원에 대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 제11조, 제12조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현저한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sup>2)</sup>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종합의견

- 금번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화재 발생시 현행 「재해구호법」이나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재난이라는 보다

1) 강원, 전북, 경남, 부산, 전남(30일), 충남(60일)

2) 경상북도포상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광범위한 재난을 전제로 한 것인데 반해, 동 조례안은 그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화재를 당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경북도의 경우 최근 3년(2020~2021)간 화재발생 건수가 8,949건으로 재산피해액이 3천8백억원이며, 이재민 505명, 인명피해 263명,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주택화재가 66건에 달하는 등 매년 화재 사고로 상당한 규모의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경북도는 농촌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이 많아 화재피해의 안전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실정이며, 최근 5년간 단독 주택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이 전국대비 14%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을 비추어 볼때 신속하고 적극적인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제공, 주택복구비 지원, 심리 회복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함으로써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신속한 피해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점과,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 조례안 시행시 지원대상기준, 지원금액 등 해당부서

에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화재피해 발생율에  
따른 지원금액에 대한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예산  
부서와의 재정 합의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1

## 화재발생 및 이재민 발생현황

### □ 경북도 화재발생 현황(2020~2022) 출처 : 소방본부.

#### ○ 화재현황

구 분	전체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비고
		사망	부상		
합계	8,949	69	515	382,377,060	
2022년	3,237	21	170	297,020,619	
2021년	2,849	21	188	38,145,736	
2020년	2,863	27	157	47,210,705	

#### ○ 화재 이재민 발생현황

구 분	전체화재(건)	주택화재(건)	주택화재 인명피해(명)		이재민		비고
			사망	부상	세대	수	
합계	8,949	2,074	43	220	284	505	
2022년	3,237	691	11	60	100	172	
2021년	2,849	689	18	88	108	201	
2020년	2,863	694	14	72	76	132	

####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주택화재 발생현황

구분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합계	66	26	6	11	0	21	2
2022년	30	13	2	5	0	9	1
2021년	22	9	2	2	0	8	1
2020년	14	4	2	4	0	4	0

### □ 최근 5년간 단독주택 화재발생 비율 출처 : 소방본부,2022.12.31.

구분	화재건수(건)			인명피해(사망, 명)		
	전체화재	단독주택	비율	전체발생	단독주택	비율
전국	197,480	28,151	14.3%	1,637	578	35.3%
경북	14,146	2,608	18.4%	107	53	49.5%

※ 농촌 및 소방관서 원거리(나홀로주택 등) 지역

## 참고 2

## 시·도별 조례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 현황

### □ 지자체별 지원 범위 출처 : 시·도 조례 발췌

시도	조례명(시도명 생략)	주요 지원사업(대상)				시행일
		심리회복	임시거처	주택지원	생활자금	
서울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0.5.19.
부산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저소득층 119안전하우스 (2천만원)	저소득층 (5백만원)	'21.1.13.
대전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	○	-	-	'23.2.24
광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	-	저소득층 (5백만원)	'21.9.29.
울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1.3.18.
경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1.7.14.
강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3.6.11.
충남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저소득층 119행복하우스 (2천만원)	-	'21.7.20.
전북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저소득층 행복하우스 (2천만원)	-	'20.8.14.
전남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	-	저소득층 (5백만원)	'21.11.4.
경남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저소득층 119희망하우스 (2천만원)	-	'21.7.20.